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인용법령 명칭이 잘못 인용된 것을 수정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법령명 오기를 정정함(안 제6조)
 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」 →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- 위원회 약칭 위치 변경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9조)
- 법률 조항의 띄어쓰기(안 제7조, 안 제12조)
 - 제6조 제4항 → 제6조제4항
 - 제11조 제1항 → 제11조제1항

○ 인용조문 오기 정정(안 제27조, 안 제29조)

- 제25조 → 제23조

- 제1항 → 제2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명확한 표기와 알기 쉬운 문장 구성을 통해 법령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, 안 제6조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고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약칭 위치를 변경하였음.

○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 조항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, 오인용 된 조문의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